

## 1. 개정이유

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3차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취지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조정하여 자동차보험금 진료비의 재정 중립성을 달성하고, 진료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(안 별표 1)

-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의원 등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율을 각각 15%p 인하

### 나.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(안 별표 2)

-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15% 인상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대한의사협회, 대한한 의사협회, 손해보험협회, 대한병원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 규정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 
“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별표 1의 1.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란  
제1호 중 “45%”를 “30%”로 하고, 같은 란 제2호 중 “37%”를 “22%”로  
하며, 같은 란 제3호 중 “21%”를 “6%”로 하고, 같은 란 제4호 중 “15%”  
를 “0%”로 한다.

별표 2의 노-732의 점수란 중 “2,444.00”을 “2,810.60”으로 하고, 같은 표  
초-42의 UZ042의 교합안정장치의 점수란 중 “8,555.92”를 “9,839.31”로  
하며, 같은 표 허-1의 분류번호 93011의 점수란 중 “97.47”을 “112.09”로  
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  
다.





분류 번호	코드	분류	점수	금액(원)	분류 번호	코드	분류	점수	금액(원)
노-7 32	FZ732	[ 검 사 료 ] 회전검사 Rotatory Chair Test	<u>2,444.00</u>		----	----	----- ----- -----	<u>2,810.60</u>	
초-4 2	UZ042	[ 치과 처치·수술료 ] 교합안정장치	<u>8,555.92</u>		----	----	----- ----- -----	<u>9,839.31</u>	
허-1	93011	[ 한방 시술 및 치료 ] 약침술	<u>97.47</u>		----	----	----- ----- -----	<u>112.09</u>	